



상주시의회 공고 제2020-24호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0일

상 주 시 의 회 의 장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개정이유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소속된 의원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는 원내 정치단체인 ‘교섭단체’의 안정적 법적 기반과 주요 기능, 예산 지원 등에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섭단체 구성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함(안 제2조)

나. 교섭단체의 기능을 규정함(안 제3조)

다. 교섭단체에 대한 경비 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4조)

라.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시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 의무 등을 규정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0월 26일까지 상주시의회의회장(참조: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 koym90@korea.kr

2) 주 소: (우37183) 상주시 중앙로 111, 상주시의회

3) 팩 스: 054-535-9854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 (전화: 054-537-784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상주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자치법규안 내용	의견	비고